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3월 19일
- 회부일 : 2007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하향 조정 (안 제6조제3항)

-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조정

나. 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안 제9조제2항)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마.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재무보고서를 구의회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1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5 ~ 2007. 3. 15(10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6월 26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을 일부 보완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다만, 수정의견은 제명의 띄어쓰기는 이미 개정되어 띄어쓰기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하고

안 제6조제3항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이상 참여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호는 기금관리기본법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다른 “호”와 중복되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2조와 12조의2는 2006년 6월 26일 기존 문항이 개정된 사항으로 의미가 같고 특별한 사유는 없으나 일부 내용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2조와 중복된 부분은 가능한 제외하고 “기금운용계획” 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의견 이며

안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운용 계획의 입법례는

2001년 1월 제정된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와
2001년 9월 제정된 “우리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2001년 11월 제정된 “우리구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규정되고
2004년 3월 제정된 “우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 일부 조정
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되어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2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일부 내용이 우리구 “재정운영조
례” 제20조에 입법되어 있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안 제12조에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은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2조에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1. 수정의견대비표
2. 관련법령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운용·관리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3.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국장 ----- 총무과장 -----. 1. (현행과 같음) 2.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 3. ----- 자 ④----- 총무담당주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용계획</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u></p> <p>3.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 -----.</p> <p>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u></p> <p>4.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u></p> <p>5.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삭 제> (현 행)</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p> <p>②기금운용관은 <u>행정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소관업무 담당주사</u>로 한다.</p> <p>③<u>지방재정법</u>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총무과장</u> ----- <u>총무담당주사</u>-----.</p> <p>③「<u>지방재정법</u>」----- -----.</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u>구청장</u>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기금운용계획</u>을 수립하여야 하며,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기금의 결산보고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u>구청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기금운용계획서</u>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u>기금결산보고서</u>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u>세입·세출예산안</u> 또는 <u>결산서</u>와 함께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u>구청장</u>은 회계연도마다 <u>기금운용계획</u>을 수립하여야 하며 <u>기금운용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u>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u></p> <p>2. <u>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u>구청장</u>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u>기금운용계획</u>을 수립하여 <u>세입·세출예산안</u>과 함께 <u>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u>구청장</u>은 매 회계연도마다 <u>출납폐쇄</u> 후 80일 이내에 <u>기금결산보고서</u>를 작성하여 <u>기금운용 성과분석</u>, <u>재무보고서</u> 및 <u>세입·세출결산서</u>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u>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편 행	개정안	수정안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12조의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 제12조제2항으로 조정</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4·3·16>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